

1. 개정이유

수도권정비위원회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구집중유발효과 등을 심의하고 있으나, 현행 규정에는 심의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 혼선 및 심의 절차 지연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개발사업의 심의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려는 것임. 또한, 하나의 시·군·구가 동일 유형의 다수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이고, 광역적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 중점 심의 내용을 사업자 및 시·군·구 등에 미리 알려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하나의 시·군·구가 동일 사업유형에 대하여 여러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의안을 통합하여 작성 및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 신설)
- 나. 심의요청자 및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 의안 심의 요청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제4항 및 별표4 신설)
- 다. 공무원인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봄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- 라.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 내용 일부를 변경함 (안 제10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수도권정비계획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('23.12.15.~'24.1.4.) 관계기관 협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한다. 다만, 하나의 시·군·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④ 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 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

의 부분) 단서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심의 대상 사업별 관련 상위계획, 광역도시계획,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

4.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대책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심의요청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안건의 경우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매년 연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3】 시·군 단위 통합심의 양식(제2조제2항 관련)

□ **심의 개요** * 시·군 작성

1. 의결주문

- “..... 조성사업” 외에 동일 사업유형 00건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

2. (동일 사업유형별) 심의안건 개요

연번	안 건	면적(m ²)	계획인구	인구유발규모 (비수도권 유입인구)	비고
1					
2					
3					
합계					

3. 지자체 일반 현황

- 면적, 인구규모 및 밀도,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
-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지자체 현황
 - 해당 지자체가 속한 수도권정비계획 권역
 -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내에서의 지자체 입지·기능

4. 지자체 도시개발 기본방향(도시군기본계획내용)

- 시군 전체 계획인구 (연도별)
- 생활권 구분 및 생활권별 인구 (그림 및 표)
- 공간구조 및 발전 축 (그림)

□ 심의 안건 목차 * 사업시행자 작성

1. 심의요청 사유

2. 주요 내용

- 사업개요, 사업내용, 사업 목적 및 필요성, 기대효과 등

3.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

- 수도권정책과의 관계
-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
-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대책
- 교통·환경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

4. 참고사항

- 향후 추진계획
-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항

【별표4】 의안의 심의 요청 시기(제2조제4항 관련)

□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

사업유형	심의 요청 시기
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학교의 신·증설, 이전	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서 정한 설립인가 또는 위치변경 인가 전
I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 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신축, 증축 또는 용도변경	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
II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제 5호에 따른 연수 시설의 신축, 증축 또는 용도변경	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

□ 종전대지 관련

사업유형	심의 요청 시기
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전대지 이용계획	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영향평가 후

□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

사업유형		심의 요청 시기
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		
1.	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	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
2.	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	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전
3.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	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
I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		
1.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	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
2.	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	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
3.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	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
III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		
1.	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	조성계획 승인 신청 전
2.	「온천법」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	온천개발계획 수립 신청 전
IV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		
1.	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	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
V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		
1.	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	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한다.</p> <p><u>다만, 하나의 시·군·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</u></p>

③·④ (생략)

제6조(회의출석) 각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0조(심의)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1. (생략)

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

⑤·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제6조(회의출석) ① -----

-----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심의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2. (생 략)

<신 설>

3. 도로,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

4.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6조(심의결과 보고등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

2. 심의 대상 사업별 관련 상위 계획, 광역도시계획, 도시기본 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 대책

<삭 제>

5.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심의결과 보고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심의요청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안건의 경우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매년 연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